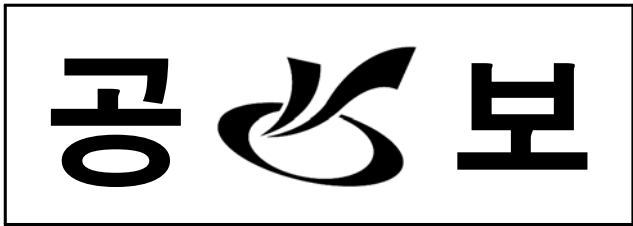
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|   |       |
|---|-------|
| 선 | 기관의 장 |
| 람 |       |

제 646호  
2008년 7월 14일 월요일

차 례

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-27호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·  
완화 고시 ..... 2
-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-28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고시 ..... 7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-547호 공시송달공고 ..... 8
-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-551호 공고 .....10
-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-553호 인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 결정(안)  
및 사전환경성검토서(초안) 공람공고 .....12

|   |  |  |  |  |  |  |  |
|---|--|--|--|--|--|--|--|
| 회 |  |  |  |  |  |  |  |
| 람 |  |  |  |  |  |  |  |

발행 : 인천광역시서구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편집 : 기획홍보실

## 고 시

인천광역시서구청고시 제2008-27호

##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·완화 고시

옥외광고물 등 관리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12조 및 제32조,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6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(이하 “광고물”이라 한다)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·완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2008년 7월 8일

##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## 1. 특정구역 지정 현황

| 도 로 명                | 시 점                 | 종 점               | 길 이    |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서 곳 길<br>(심곡사거리↔서구청) | 제일타이어<br>(심곡동239-1) | 화성빌딩<br>(심곡동 278) | 0.58km | ※도로 양쪽면에 접하는 모든 토지 및 건물에 적용 |

## 2. 광고물의 표시제한 사항

## 가. 일반적 표시기준

- ①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은 2개 이내로 한다. 단,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 간판 2개를 포함 3개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.
- ② 신고배제 광고물의 경우에도 업소별 광고물의 총수량, 크기, 표시방법은 특정구역 고시기준에 의한다.

- ③ 신축, 개축 등의 경우에는 건축주로부터 광고물 등의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표시하여야 한다.
- ④ 광고물 등의 재질은 유연성원단(플렉스 등)사용을 지양하고, 업소의 특성과 건축물 및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다양한 재료사용을 권장한다.
- ⑤ 모든 광고물은 부착할 벽면 또는 지주 등에 고정시켜 표시하여야 하며, 자연력에 의하거나 인위적인 방법과 전기 등을 이용한 회전형 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다.
- ⑥ 건축물 및 광고물의 디자인 특성상 이 고시내용을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표시할 수 있다.

#### 나. 광고물 등의 조명 표시방법

- ① 직접조명 방식·점멸 또는 화면이 변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으며, 광원에 커버를 씌워 간접조명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
- ② LED(발광다이오드) 조명은 점멸·화면을 변화시키지 않고 커버를 씌워 간접조명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조명(형광등)으로 간주한다.

#### 다.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

- ① 가로형 간판은 1개 업소에서 1개를 표시할 수 있다. 단, 꼭각지점에 위치한 업소는 2개를 표시할 수 있다.
- ② 건물정면 1층부터 5층까지 가로형 간판을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- ③ 가로 크기는 벽면 가로폭의 80% 이내로 하여야 하며, 최대 크기는 10m 이내로 표시하고, 벽면으로부터 돌출되는 부분은 30cm 이내로 하여야 한다.
- ④ 건물 최상단에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세로 최대크기는 100cm 이내로 하며,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을 초과할 수 없다.

- ⑤ 간판에 표시되는 주된 문자의 세로크기는 1층부터 3층은 50cm 이내, 4·5층은 60cm 이내로 하며 그 이상은 아래의 계산에 의하여 산출된 크기 이내로 한다.

$$(6\text{층 이상 표시문자 세로크기 계산식}) \\ 40\text{cm} + (\text{해당층수} - 1) \times 5\text{cm} \text{이내}$$

- ⑥ 보조표시내용에는 지점명, 전화번호, 인터넷주소, 영업내용 중 2가지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.
- ⑦ 보조표기내용은 가로간판 세로크기의 4분의 1 이내로 표기하여야 한다.

#### 라. 돌출 간판의 표시방법

- ① 돌출 간판은 1개 업소에서 1개를 표시할 수 있다.
- ② 건물의 우측 모서리 한 곳에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되 하나의 건물에는 1줄만 표시하여야 한다. 단,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건물은 도로에 접한 각 건물면의 우측모서리에 각각 1줄씩 표시할 수 있다.
- ③ 돌출 간판의 최하단은 지상에서 3m 이상으로, 최상단은 건물 10층 창문선 상단 이하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- ④ 돌출 간판의 1면의 면적은 업소당 1㎡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돌출폭은 벽면에서 1m 이내, 돌출간판의 세로길이는 1.5m 이내로 해야한다.

#### 마. 소형 돌출간판의 표시방법

- ① 1층에 위치한 업소가 표시하는 간판으로서, 옥외광고물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1개업소당 1개를 출입구 좌·우측에 설치할 수 있으며, 간판 총수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 다만 소형 돌출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돌출간판을 표시할 수 없다.

- ② 소형 돌출 간판의 최하단은 지상에서 2m 이상으로, 최상단은 3m 이하에 위치하도록 건물 벽면에 부착·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위치는 건물별로 통일시킨다.
- ③ 단순한 상호표기는 지양하며, 업소를 상징할 수 있는 작은 예술적 조형물로 표현한다.
- ④ 간판 1면의 면적은 최대 0.36㎡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, 간판의 두께는 최대 20cm를 초과할 수 없고, 벽면으로부터 80cm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## 바.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

- ① 단독지주이용간판은 표시할 수 없으며 10개 이상의 업소를 연립형으로 당해 부지내에 1개 이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.
- ② 지주이용간판의 설치는 보도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을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- ③ 간판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 이내로 하며 1면의 면적은 3㎡ 이내로 하여야 한다.

### 3. 광고물의 표시를 권장하는 사항

- ① 지역내 많은 외국인의 유입에 따라 외국인 고객유치를 위한 영어 등 국제공용어 또는 다른 외국어를 한글과 병기하도록 한다.
- ② 신축건물의 분양 또는 임대사업자는 특정구역 광고물표시기준을 분양(임대)계약서 내에 명시하거나 별도의 안내문으로 입점자에게 배부하여 특정구역 광고물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.

#### 4. 광고물 심의 및 법령 등의 적용

- ①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지구단위 사업계획구역의 광고물 설치기준은 이 고시에 따른다.
- ② 이 고시기준에서 제한 또는 완화하지 아니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은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다.
- ③ 이 고시기준을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표시·설치 기준에 의한다.

#### 5.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에 대하여는 이 고시기준에도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.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-28호

##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고시

주택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08년 7월 14일

###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1. 사 업 명 : 민영아파트 건립공사

2. 사업주체 : 대한토지신탁(주) 대표 김재희

3.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

가. 위 치 : 서구 검단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3블럭 1~5롯트

나. 대지면적 : 21,693.20m<sup>2</sup>

다. 연 면 적 : 65,488.146m<sup>2</sup>

라. 사 업 비 : 176,580,496,000원

마. 사업규모 : 지하2층 지상13~ 15층 9개동 309세대

4. 사업기간 : 2007.11.19 ~ 2010.01.18

5.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

“변경사항 없음”

6. 변경내용

가. 구조변경 : 파일기초 ⇒ 파일 및 지내력 기초 혼합

나. 부대복리시설 면적증가 20.882m<sup>2</sup>: GX룸, 골프연습장, 기계·전기·발전기실

다. 지하주차장 : 동출입구 확대 및 주차1면 감소

라. 단위세대 : 현관바닥재 개선, 주방가구 변경 등

|   |   |
|---|---|
| 공 | 고 |
|---|---|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- 547호

## 공 시 송 달 공 고

[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]

1. 자동차관리법 제10조, 제29조 및 제34조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주소불명, 수취인 미거주, 수취인 부재, 이사감 및 장기간 방치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,
2.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2008년 7월 8일

## 인천광역시서구청장

☐ 공고기간 : 2008. 7. 8 ~ 2008. 7. 23 (15일간)

☐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1. 예정된 처분의 제목 |               |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
| 2. 당사자        | 성 명<br>(차량번호) | 박춘기외 2인 ( “불임” 위반차량내역 참조)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
|               | 주 소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
| 3. 처분의 원인된 사실 |               | ( “불임” 참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
| 4. 처분하고자하는내용  |               | 과태료 부과 및 점검·정비·원상복구 명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
| 5. 법 적 근 거    |               |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제37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
| 6. 의 견 제 출    | 기관명           | 인천광역시 서구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부서명 | 교통민원과 |
|               | 주 소           | 인천시 서구 서곶길 323(심곡동 244) (☎ 560-4872, FAX 560-4869) |       |       |
|               | 기 한           | 2008년 7월 23일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



## ※ 의견제출시 유의사항

-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, 컴퓨터통신, FAX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,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컴퓨터통신(yut2000@seo.incheon.kr)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, 의견을 제출한 후에도 의견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.
-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[붙임]

☐ 위반차량내역

| 연번 | 당 사 자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위 반 사 항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비고 |
|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|
|    | 성명    | 주소(사용본거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차량번호          | 위반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위반법규            |    |
| 1  | 박춘기   | 인천시 서구 원당동<br>원당지구 69블록1외 2필지<br>(13/1) 엘지원당자이아파트<br>701동 1204호 | 인천82나<br>5100 | 전조등청색전구,<br>후불법등화장치,<br>격벽보호봉 탈거 | 제29조제1항<br>제34조 |    |
| 2  | 정지흥   | 인천시 서구 연희동 685-12<br>(14/3) 유성빌라 가동 102호                        | 91머<br>4806   | 격벽제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34조            |    |
| 3  | 이분자   | 인천시 서구 가정동 543-37<br>(20/3) 드림빌라 6동 301호                        | 86무<br>8301   | 봉인탈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0조제3항         |    |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- 551호

**공 고**

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-271호(2007.12.24)호로 실시계획[변경]인가 고시된 '석남완충녹지2단계조성사업'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'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' 제16조에 의거 손실보상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, 거소 등 송달 장소를 알 수 없어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협의기간 내 손실보상 협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.

2008년 7월 9일

**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****1. 보상협의대상 물건 내역**

- 토지

| 소재지       | 지번     | 지목 | 전체면적<br>(㎡) | 편입면적<br>(㎡) | 소유자 |    | 보상금액(원)    |
|-----------|--------|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|------------|
|           |        |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성명  | 주소 |            |
| 인천 서구 석남동 | 189-47 | 잡  | 105         | 105         | 강희문 |    | 55,597,500 |

※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협의 계약 전까지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수용재결이 있기 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청구 가능

- 지장물 등

해당사항 없음

**2. 보상협의 및 계약기간 : 2008.07.09 ~ 2008.08.11 (34일)****3. 협의 및 계약체결 장소 :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(삼곡동244)**

서구청 본관4층(녹지경관과 공원팀) ☎ 032-560-4800, 4805

**4. 보상방법 및 절차**

- 보상금 산정 : 2개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  
(토지소유자 추천 가능, 단 해당 요건 충족 시)
- 보상 방법 : 본인과의 대면 협의 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 등 행정절차이행  
후계좌입금

**5. 보상협의 계약체결시 구비서류**

- 인감증명서 2부 , 단 세입자 및 물건 등 보상자는 1부(일반용)  
(토지주는 부동산매도용 1부 :매수자는 “인천광역시 서구” /일반용 1부)
-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(임야)대장 각 필지별 1부(토지 소유자 해당)
- 주민등록초본 1부(전 주소 포함)
- 지참물 : 인감도장, 예금통장, 신분증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- 553호

## 인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 결정(안) 및 사전환경성검토서(초안) 공람공고

인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25조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열람·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아울러 『환경정책기본법』 제25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사전환경성 검토서(초안)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.

2008년 7월 14일

###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#### 1. 도시관리계획 결정(안) 관한계획

- ☐ 시 설 명 : 도로
- ☐ 입안내용
- 위 치 :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327-2번지 일원
  - 내 용 : 신규(소로 2-180호선)
- ☐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- 도로 결정조서

| 구분 | 규모 |    |     |           | 기능       | 연장<br>(m) | 기점    | 종점    | 사용<br>형태 | 주요<br>경과지 | 최초<br>결정일 | 비고 |
|----|----|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|
|    | 등급 | 류별 | 번호  | 폭원<br>(m)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|
| 신설 | 소로 | 2  | 180 | 9         | 국지<br>도로 | 151       | 대2-29 | 중1-57 | 일반<br>도로 | -         | -         |    |

☐ 도시계획시설 결정사유서

○ 도로 결정사유서

| 변경전 도로명 | 변경후 도로명 | 변경 및 결정내용          | 변경 및 결정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-       | 소2-180  | ◦ 신설(B=9m, L=151m) | ◦사회복지시설(서부여성회관) 진입로 확보에 따른 도로 신설 |

## 2. 사전환경성검토서(초안)에 대한 사항

- ☐ 사업명 : 서부여성3회관주변 진입도로 개설공사
- ☐ 위치 :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327-2번지 일원
- ☐ 사업내용 : 신설(B=9m, L=151m)
- ☐ 설명회 및 일시 : 설명회 생략(공람으로 대체)
- ☐ 사전환경성검토서에 관한 관계도서 : 게재생략

## 3. 열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## 4. 열람장소

-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개발과 (☎ 560-4762)
-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3동 주민센터 (☎ 560-3166)

※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관계도서와 사전환경성검토서(초안)은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개발과, 석남3동 주민센터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며,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